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허청장은 심사관 중에서 심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특허청장은 심사관 중에서 심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u>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u>⑤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p>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u>&lt;삭 제&gt;</u></p>